인권센터 규정

제정	:	2017.	2.	28.
개정	:	2018.	3.	1.
개정	:	2018.	8.	31.
개정	:	2019.	3.	1.
개정	:	2022.	9.	1.
개정	:	2023.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지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 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 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7-1-18 인권센터 규정

- 4. "피해자"라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5. "가해자"라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7.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8.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을 말한다.
- 9.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하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에는 인권위원회를 두며, 위원 및 전문인력을 둔다.
- ③ 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둔다.
- ④ 센터는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상담 또는 조사담당 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업무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해 법률, 인권문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권침해 등의 상담, 신고 및 민원접수
- 2 접수된 인권침해 등 사건 및 민원에 대한 인권위원회 조사 요청
- 3. 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을 위한 예비조사
- 4.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인권위원회

- 제7조(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며, 교직원, 학생,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다.
- ③ 인권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② 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 ③ 회의 진행을 위한 다과 및 식대 지원과 외부위원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을 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센터의 운영계획 및 발전방안
- 2.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규정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지시한 사건 및 민원의 조사
- 4. 제10조 제2항 및 제6조 제3호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의 직권조사
- 5. 제3호 및 제4호의 조사 중 피해자 및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 분리 등 안전조치
-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4 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 제10조(신고 접수 및 보호조치) ① 인권침해 사유가 발생할 시 피해자나 신고인은 서면·구두· 전자매체 등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신고를 접수한 센터장은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조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인권위원회의 조사 회부 여부를 결정 한다.
- ③ 센터장은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 접수 또는 제2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7-1-18 인권센터 규정

피해자 또는 신고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 수업의 장소변경 또는 공간분리, 휴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요청기한)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구제 청구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방법 및 보고) ①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6항에 따른 사건의 조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학과 및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
- 4. 시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상담, 진단 등의 의뢰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요구에 불응 할 경우 진술 및 자기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정보의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화해 등 조치) ①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신고할 수 없다. 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지는 사안에 관하여서는 신고 등을 위한 조사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다.
- ② 센터장은 당사자 간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 위원회는 즉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인권위원회는 조사는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외부위촉위원을 조사책임자로 선임하며,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 중 적합한 자를 선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피신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ㅇ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③ 제3항에 의해 선임된 조사책임자는 지체 없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동 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즉시 보고 한다.
- ⑥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시건의 처리에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 접수 후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제14조(조치 등) 조사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때에는 센터장은 조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하고 다음 조치를 건의한다.
 - 1. 피신고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분리조 치, 인식개선 교육 등 필요한 조치
 - 2. 당사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등
 - 3.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 요구
 - 4.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이 반성 할 수 있는 조치
- 제15조(비밀유지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 ①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 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인권위원장), 또는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조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③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책임자 및 당해 사건의 당사자,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의 자격을 갖는 위원은 당해 사건의 심의와 결정에서 제척된다.
- ④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 5 장 보 칙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진행하는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